



인지세 납부 안내문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할 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본세의 최대 30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납부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 당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 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
-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을 할 때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납부 세액

과세문서	세액	수입인지가격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온라인 이용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네이버 검색창 '전자수입인지' 검색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3. 구매(납부정보 입력) ※ 00:30~22:00 동안 구입 가능

구분	내용
용도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150,000원
건수	1건



4. 출력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재발행 불가)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주체에 사본제출 필수

오프라인 이용방법

1. 가까운 우체국·은행 방문(방문전 문의 요망)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 현금 수납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불가)
3. 전자수입인지 발급완료
4. 사업주체에 사본제출 필수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용도	<input type="checkbox"/> 인지세 납부용 <input type="checkbox"/> 행정수수료용
금액	대 수 <input type="text"/> 대량발급 <input type="checkbox"/>
구매자 정보	성 명 (상 호)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주민(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종이수입인지 교환 <input type="checkbox"/> 전자수입인지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계국에서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목적 : 우체국 2. 개인정보 제공목적 : 전자수입인지 발행·판매 및 판매업무처리 3. 제공대상 개인정보 :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20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1. 구매자 정보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수집함을 알려드립니다.
2. 용도는 인지세 납부용(예시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금전소비대차, 신용카드 회원신청서 등)과 행정수수료용(예시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3. 구매자 정보는 전자수입인지를 직접 구매하는 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4. 대량발급 : 용도와 금액이 같은 대량(10,000여 미만)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선택
※ 단, 대량발급을 선택한 경우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발급 가능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제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